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34
------	-----

제출년월일 : 2004.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04. 3.11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 (위원회의 기능)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 평창경찰서장
 - 평창교육청교육장
 - 평창군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
 - 평창군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업무 담당과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산하기관장
 - 평창군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재난업무 담당이 됨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 제7조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

○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참고사항

- 가. 관 계 법 령 : 별 첨
- 나. 예 산 조 치 : 해당없음
- 다. 관 계 부 처 승 인 : 해당없음
- 라. 입 법 예 고 : 해당없음
- 마.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해당없음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평창경찰서장
 3. 평창교육청교육장
 4.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
 5.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하기관장
 7. 평창군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업무 담당과장
 8.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2004.3.11. 법률 제7188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자연재난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인적재난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기반재난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2004.5.29. 대통령 제18407호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 【 시행령 별표 】

[별표 1]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 | |
|-----------------|---|
| 1. 재외공관 | 26. 한국수자원공사 |
|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27. 한국도로공사 |
| 3. 국립식물검역소 | 28. 한국토지공사 |
| 4. 지방체신청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
| 5. 국립검역소 | 30. 한국공항공사 |
| 6.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 31. 항만공사 |
| 7. 지방노동청 | 32. 한국방송공사 |
| 8. 지방항공청 | 33. 국립공원관리공단 |
| 9. 지방국토관리청 | 34. 한국산업안전공단 |
| 10. 홍수통제소 | 35. 한국산업단지공단 |
| 11. 지방해양수산청 | 36. 부산교통공단 |
| 12. 지방산림관리청 | 37. 한국철도시설공단 |
| 13. 철도청지역사무소 |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14. 시·도의교육청 | 39. 한국원자력연구소 |
| 15. 지하철공사 |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16. 도시철도공사 |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17. 농업기반공사 |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18. 농수산물유통공사 | 43. 산림조합중앙회 |
| 19. 한국가스공사 | 44. 대한적십자사 |
| 20. 한국가스안전공사 | 45. 하천법제22조의규정에의한댐등의설치자(관리자를말한다) |
| 21. 한국전기안전공사 |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
| 22. 한국전력공사 |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
| 23. 한국자원재생공사 | 48. 법제9조의규정에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기관및단체 |
|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49. 그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및단체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
| 25. 대한주택공사 | |